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7가단520176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8. 6. 14.

판결 선고2018. 8. 9.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2,064,310원 및 그 중 81,145,095원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7. 5.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7. 6. 1. 접수 제1929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5. 3. 19.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2015. 3. 25. 소외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2017. 6. 17. 피고 A이 대출금 상환연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소외 은행은 2017. 7. 6. 위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그 후 2017. 9. 28.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따라 소외 은행에 피고 A이 미상환한 대출원리금 81,145,0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은 합계 82,064,310원(= 대위변제금 81,145,095원 + 위약금 406,350원 + 채권보전비용 대지급금 512,865원)이고, 그 밖에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연 10%의 약정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한편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사고 발생 직전인 2017. 5. 31.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인인 피고 B와 사이에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곧이어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7. 6. 1. 접수 제192948호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82,064,31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1,145,09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9.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7. 12. 20.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고, 피고 B은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에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가 피고 A에게 2017. 5. 28.에서 29.까지 2천만 원을 실제로 대여하고 설정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도 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그 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항변하나,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는바, 위 항변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미리

별지